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지연기간에는 다음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1호	500
나. 법 제78조제5항 및 제8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2호	50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		100

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150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0
다. 법 제107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100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00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00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00
라.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1)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0일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300
4)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인 경우		400
5) 신고를 지연한 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
마. 법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2	500
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1호	1,000
사.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3호의3	
1)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50
3)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인 경우		200
4)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이 4개월 이상이		250

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경우 1)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2)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3)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4) 시·도조례로 정하는 인계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0조제2항제4호	100  200  300  400
자. 법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2호	1,000
차. 법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40조제1항제3호	1,000